

#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,8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

## 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(단위 : 천 원)

| 연번 | 용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역기간<br>(1차분) | 용역비<br>(1차분)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①  |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   | 28개월<br>(7개월) | 2,280,000<br>(490,800) | PQ |
| ②  |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(공사시) | 30개월<br>(7개월) | 1,300,000<br>(309,000) |    |

※ ① ~ 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

## 2.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

### 【① 건설사업관리용역】

- 1)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**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 - 일반 또는 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-일반)**을 등록한 업체.

### 【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(공사시)】

- 1)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에 따라 **제1종 환경영향평가업**으로 등록한 업체

## 【공통사항】

- 1)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**단독** 또는 **공동수급(공동이행방식)**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 **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(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)**.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,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.
- 2)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안부 예규)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, 종전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안부 예규)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, **가능한 종전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%이상**으로 공동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
- 3) 금회 공고한 ① ~ ② 용역은 **1사 1건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며,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**됩니다.
- 4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
## 3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“2. 가.”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으로 참여 가능합니다.
- 나.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,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.
- 다. 공고일 기준, 지역업체 참여도는 ‘종전의 전라남도’에 주된 영업소(본점)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, 가능한 **종전 전라남도 업체 참여지분율을 49%이상으로 공동 참여**하시길 바랍니다.
- 라.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(공동 구성원 모두)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,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마.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.

### 3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자료 제출 안내

| 제출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6. 8. 18.(화) 13:00~16:00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<br>무안청사 비즈니스룸 (1층) | 직접제출<br>(우편, 이메일, 팩스접수 불가) |

가. 작성기준(안내서) 교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 홈페이지)  
나. 제출서류
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: 2부 (원본 1부, 사본 1부(원본대조필))
-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: 8부 (2부는 평가서에 합철, 나머지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(無記)별권 제출)【① 건설사업관리용역】
-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: 8부 (2부는 평가서에 합철, 나머지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(無記) 별권 제출)【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】
- USB 1개(사업수행능력 평가서, 자기소개서 또는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, 업무중복도, 자기평가서 파일 첨부)
- 위 첨부 파일은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관계자 메일(해운항만과 양유철, [chul0402@korea.kr](mailto:chul0402@korea.kr))로 송부 및 확인 必

※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할 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(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)

-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

다. 평가자료 작성방법

- ① 건설사업관리용역: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 「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」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.
- 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: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-91호)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 「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」에 따릅니다.

### 4.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

가. 입찰참가대상자 선정

#### 【① 건설사업관리용역】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시한 「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

사전 심사하여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**에서 정한 일정 점수(87.5점)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.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.

## 【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(공사시)】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,4,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**에서 제시한 「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」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**에서 정한 일정 점수(87.5점)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.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.

## 【공통사항】

가.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, **2026. 8월중 입찰**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,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.(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나. 낙찰자 결정

- 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(행안부 예규) 제2장의2 기술·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「별표 1」 1.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.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'에 따라 결정합니다.
  - ※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(1점)를 부여합니다.
  - ※ 경영상태 평가는 P.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(2점)를 부여합니다.
- 2)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,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.

## 5. 기타사항

- 가. 사용언어는 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」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나.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조회 결과 허위 또는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(위임장, 재직증명서 제출)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라. 평가자료는 제출 마감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마. 평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. 또한 업무의 연속성,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통보하고 동등

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. 교체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를 결정합니다.

- 바.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**공고일을 기준으로** 하며,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(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)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.
- 사.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(총점)하며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평가항목 중 **“면접”항목과 “업체 능력평가”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**합니다.
- 아. 입찰자는 반드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자.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.
- 차. 평가일정, 용역기간, 용역비,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, 정정 공고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,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(☎061-286-6841, 담당자 양유철)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